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1180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한승훈(기소), 신다연(공판)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목재 가구 제조 및 실내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9. 10.경부터 2025. 10. 1.경까지 사이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저작권자인 D 사(이하 'D'라 한다)의 'E',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G',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I 및 J, K'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경찰 검증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자료-프로그램등록증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소프트웨어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¹⁾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경제적 사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빈 _____

1)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는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영리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21

범 죄 일 란 표

연번	저작권사	소프트웨어명	설치수량	복제	정품	비고
1			4	4	0	
2			4	4	0	
3			1	1	0	
4			1	1	0	
5			3	3	0	
6			4	4	0	
7			2	2	0	
8			3	3	0	
9			3	3	0	
합계	총 10대(PC), 소프트웨어 9종, 25개		25	25	0	
비율				100.00%	0.00%	